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83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김예지·백종헌·최수진

엄태영 · 조정훈 · 박덕흠

송석준·서천호·강대식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이에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92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절차, 제3항"으로 한다.

②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 및 「약사법」제23조제4항에 따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92조제3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
	및 「약사법」제23조제4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
	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③ 제1항 및 제2항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	
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underline{4}$ 제 1 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확인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u>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u>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다	- .	

제92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1의2. (생략) <u><신 설></u>

2. ~ 8. (생 략)

④ (생 략)

통한 마약류 의약품정보의	확
<u>인방법•절차, 제3항</u>	

제9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3)	 	 	 	

1. · 1의2. (현행과 같음)

- 1의3.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지 아니 한 자
- 2. ~ 8.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